

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위

-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6. 2. 18(목) 평창군수(자치행정과장)
- 회부일자 : 2016. 04. 14(목)
- 상정일자 : 2016. 04. 27(수) 제217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자치행정과장 남동선)

- 제명 띄어쓰기 및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수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오정희)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조문 수정과 제명 띄어쓰기에 따른 다른 조례의 인용 제명을 수정하는 내용으로,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”를 “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제95조”를 “제104조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제3항 중 “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”를 “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② 평창군 이효석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4조 중 “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”를 “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③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”를 “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④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”를 “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26조 중 “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”를 “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⑤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”를 “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⑥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·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0조제1항 중 “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”를 “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⑦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”를 “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⑧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2조제1항 단서 중 “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”를 “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⑨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제3항 후단 중 “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”를 “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⑩ 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15조제1항 단서 중 “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”를
“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24조 중 “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”를 “「평창군 사무의
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⑪ 평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12조제2항 중 “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”를 “「평창군
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⑫ 평창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 중 “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”를 “「평창군 사무의
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